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제643호 2018. 5. 2.(수)

선 결	기관의 장
--------	-------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18-48호 도로명 부여 고시	3
거창군 고시 제2018-49호 하천점용 허가 고시문(웅곡천)	13
거창군 고시 제2018-50호 하천점용 허가 고시문(대산천)	14
거창군 고시 제2018-51호 하천점용 허가 고시문(사천천)	15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18-565호 2018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	16
거창군 공고 제2018-572호 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3-164호선)결정(변경)열람공고	19
거창군 공고 제2018-576호 자동차와 건설기계 검사 경과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 고	23
거창군 공고 제2018-577호 자동차와 건설기계 검사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4
거창군 공고 제2018-587호 소하천점용 허가 공고문(고창천)	25

이 년									
--------	--	--	--	--	--	--	--	--	--

발행 : 거창군 / 편집 : 기획감사실 (055-940-3043, 행정 3043)

도로구간 설정과 도로명 부여 고시

거창군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도로구간 설정과 도로명 부여에 관한 사항을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1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 5. 2.

거창군수

1. 고시일 : 2018. 5. 2.
2. 도로의 길이·폭·시점·종점·간격·기초번호 등: 붙임과 같음.
3. 도로명과 그 부여 사유: 붙임과 같음.
4. 유사도로명과 동일도로명: 붙임과 같음.
5. 도로구간 등의 변경 요건 및 절차

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 신청 주소사용자의 5분의1 신청	신청을 받은 날부터 ⇒ 10일 이내	주민 의견 수렴 공고 14일 이상	주민의견수렴한 날부터 ⇒ 30일 이내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도로명주소위원회 개최	심의 마친 날부터 ⇒ 10일 이내
공고 및 신청인 통보 . 심의 결과 . 내용 및 절차	공고한 날부터 ⇒ 30일 이내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 주소사용자의 1/2 이상	동의 얻은 날로부터 (동의 생략 포함) ⇒ 10일 이내	고시 및 신청인 통보 변경사항 및 변경기준일	
		서면 동의를 못 받은 경우 주소사용자의 1/2 이하	동의 만료일로부터 ⇒ 10일 이내	공고 및 신청인 통보 결과 통보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봉사실(☎055-940-331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도로구간 설정 고시 조서 1부.
 2. 도로명 부여 고시 조서 1부.
 3.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 고시 도면 1부. 끝.

붙임 1 도로구간 설정 고시 조서

구간	도로구간 설정		도로 길이 (m)	도로 폭 (m)	도로 위계	기초번호	기초번호 간격(m)	중심선
	시작점	끝지점						
1	북상면 농산리 196-2	북상면 농산리 102	1,438	7	길	1→144	20	도면 참조
2	마리면 율리 745-2	위천면 남산리 30-3	547	12	길	1→ 56	20	도면 참조
3	위천면 남산리 33-1	위천면 남산리 26-2	546	5	길	1→ 56	20	도면 참조
4	위천면 남산리 31-6	위천면 남산리 73	167	5	길	1→ 18	20	도면 참조
5	위천면 남산리 975-13	위천면 남산리 89	324	4	길	1→ 34	20	도면 참조
6	남상면 월평리 198-4	남상면 월평리 2370	220	6	길	1→ 22	20	도면 참조
7	남상면 대산리 121-3	남상면 월평리 2280	568	8	길	1→ 60	20	도면 참조
8	남하면 지산리 1776	남하면 지산리 1214	1,200	4	길	1→120	20	도면 참조
9	남하면 지산리 1777-3	남하면 지산리 2089	1,900	4	길	1→190	20	도면 참조
10	남하면 지산리 1743	남하면 지산리 1633	2,500	4	길	1→342	20	도면 참조
11	남하면 지산리 1781-1	남하면 지산리 1571	1,100	4	길	1→100	20	도면 참조
12	남하면 양항리 960	가조면 동례리 574-3	8,100	15	로	1→822	20	도면 참조
13	가조면 석강리 442	가조면 석강리 493	1,500	4	길	1→148	20	도면 참조
14	가북면 용산리 1095	가북면 용산리 820-4	250	6	길	1→ 26	20	도면 참조

붙임 2 도로명 부여 고시 조서

구간	도로명	부여사유	유사 도로명
1	용문들길	북상면 농산리의 대표적인 들인 용문들 명칭 반영	-
2	화리골1길	화리골이라는 옛지명이 반영된 도로에 일련번호를 활용	화리골길
3	화리골2길		
4	화리골3길		
5	화리골4길		
6	창포원길	남상면 대산리 일원 창포원 조성사업으로 시설물 건립에 따라 창포원 명칭 반영	-
7	창포원1길		
8	자하1길	고종 32년(1896년) 거창부사 홍세영에 의해 붙여졌다고 전해지는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에서 분기되는 도로에 일련번호를 활용	자하길
9	자하2길		
10	자하3길		
11	묘적사길	각자의 마음가짐, 깨달음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묘적사 절 명칭을 반영	-
12	거창88로	구88고속도로 명칭을 반영	-
13	우륵5길	역사적 인물인 우륵의 탄생지임을 반영한 우륵길 도로에 일련번호를 활용	우륵길, 우륵1길~4길
14	용산3길	가야산에서 마을 뒤까지 남서로 뻗은 산줄기가 용 같아서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에서 분기되는 3번째 도로임.	용산1길~2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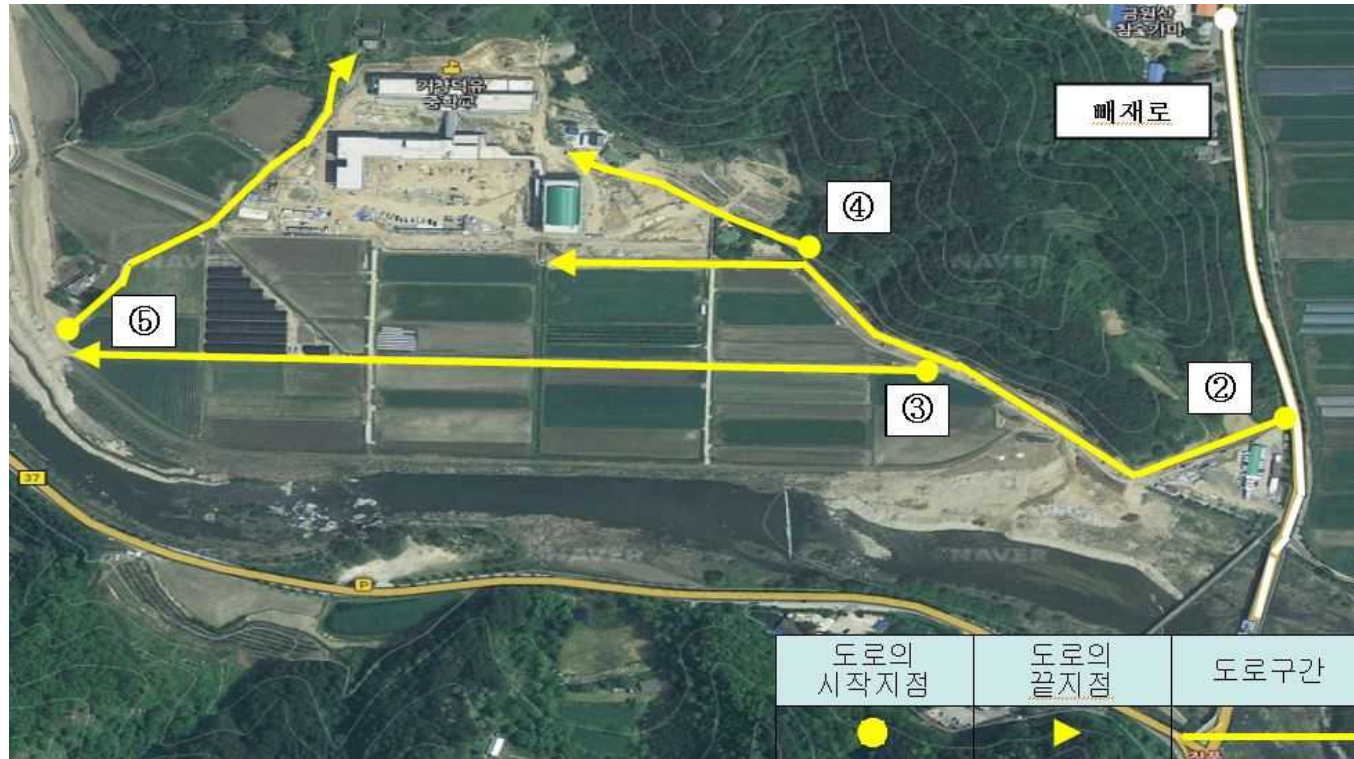
붙임 3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 고시 도면

1. 북상면 농산리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 고시 도면



도로구간	도로명
①	용문들길

2. 위천면 남산리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 고시 도면



도로구간	도로명
②	화리골1길
③	화리골2길
④	화리골3길
⑤	화리골4길

3. 창포원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 고시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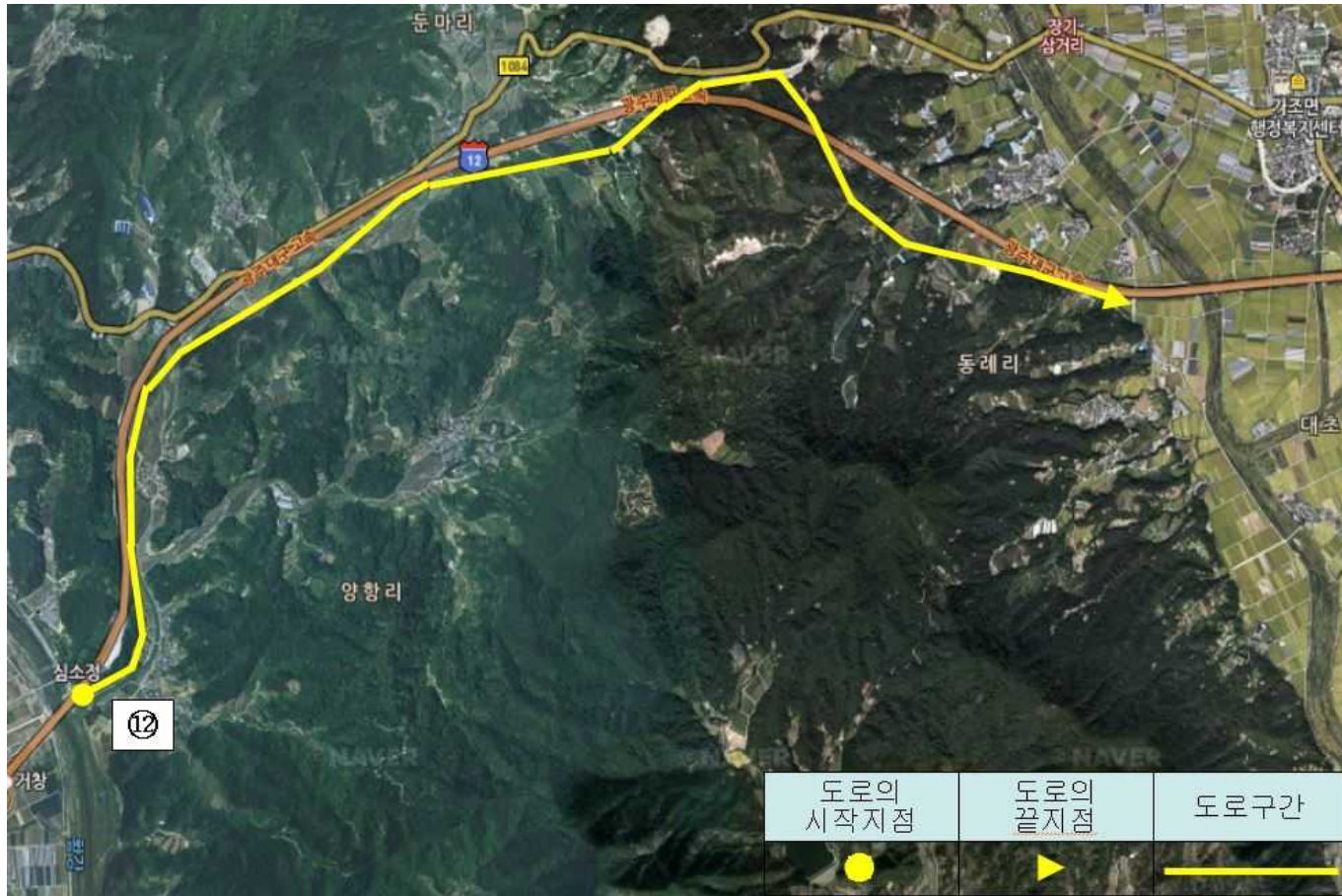
도로구간	예비도로명
⑥	창포원길
⑦	창포원1길

4. 남하면 지산리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 고시 도면



도로구간	예비도로명
⑧	자하1길
⑨	자하2길
⑩	자하3길
⑪	묘적사길

5. 구88고속도로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 고시 도면



도로구간	예비도로명
⑫	거창88로

6. 가조면 석강리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 고시 도면



도로구간	예비도로명
⑬	우륵5길

7. 가북면 용산리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 고시 도면



도로구간	예비도로명
⑭	용산3길

고시 제2018 - 4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일

거 창 군 수

신 청 인	도시건축과장	주 소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하 천 명 (하천등급)	웅곡천(지방하천)		
공 사 (점용 · 사용) 개요	위 치	경남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 1459-1번지 등 5필지	
	면 적	일시점용: 309.0㎡ 영구점용: 1,799.0㎡	
	점용기간	2018년 4월 18일 ~ 2019년 4월 17일(영구)	
	목적 및 사유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교량 신설(L=28.7m, B=9.6m)	

고시 제2018 - 5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일

거 창 군 수

신 청 인	한국도로공사 창녕밀양건설사업단	주 소	경남 밀양시 미리별로 22
하 천 명 (하천등급)	대산천(지방하천)		
공 사 (점용 · 사용) 개요	위 치	경남 거창군 남상면 둔동리 1557번지 등 7필지	
	면 적	일시점용: 322.16㎡	
	점용기간	2018년 4월 25일 ~ 2024년 8월 28일	
	목적 및 사유	함양~창녕 간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가교 설치 (L=28.0m, B=8.0m)	

고시 제2018 - 5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일

거 창 군 수

신 청 인	한국도로공사 창녕밀양건설사업단	주 소	경남 밀양시 미리별로 22
하 천 명 (하천등급)	사천천(지방하천)		
공 사 (점용 · 사용) 개요	위 치	경남 거창군 신원면 과정리 889번지 등 8필지	
	면 적	일시점용: 639.0㎡ 영구점용: 1,403.0㎡	
	점용기간	2018년 4월 25일 ~ 2024년 8월 28일(영구)	
	목적 및 사유	함양~창녕 간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가교 설치 및 교량 설치 가교 1: L=40.0m, B=8.0m, 가교 2: L=28.0m, B=8.0m 교량 1: L=370.5m, B=27.9m(영구점용)	

2018년 거창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안)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4월 26일

거창군수



1. 공고명: 2018년 거창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
2. 공고기간: 2018. 4. 26. ~ 5. 26. (30일간)
3. 지정사유: 산사태발생우려가 있는 지역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
4. 지정 대상지 소재 및 면적: 붙임1 참조
5.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붙임2 참조
6. 의견제출: 2018. 5. 28일까지
 - 공고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기간 이내에 이의 신청서(붙임3)를 거창군 산림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도면 열람장소: 경상남도 거창군 산림과
8. 경과조치: 공고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함.
9. 지정예정일: 2018. 6월 중 (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거창군 산림과(☎055-940-3462)로 문의바랍니다.

붙임: 2018년 거창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내역 1부. 끝.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산림보호법」

제45조의10(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누구든지 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제45조의11(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 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산사태예방을 위하여 「사방사업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지점검 실시 결과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관련 시설·토지 등의 사용을 제한·금지하거나 보수·보강 또는 제거 등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관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2항의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신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제54조의2(벌칙) 제45조의10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신청 이유			
지정 예정지	소재지		
	면적		㎡
이의신청 면적			㎡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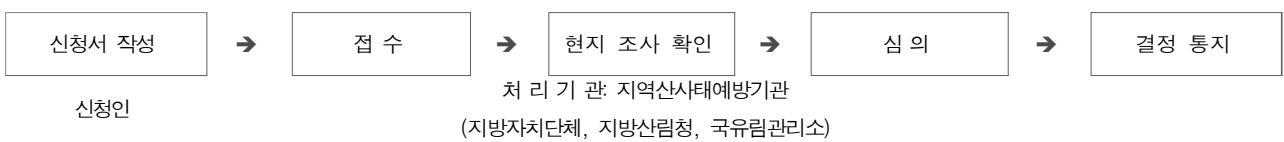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 이유에 관한 서류	수수료 없 음
------	--------------	------------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3-164호선) 결정(변경) 열람 공고

거창군 고시 제2002-25호(2002. 6. 10.)로 결정된 「군계획시설:도로(소로3-164호선)」에 대한 결정(변경)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열람 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04. 26.

거 창 군 수

1. 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가. 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164	6.0	국지 도로	483	거창 동변 514-3	소로3-167	일반 도로	거고 제25호 (2002.06.10)	
변경	소로	3	164	6.0	국지 도로	480	거창 동변 514-3	소로3-167	일반 도로	거고 제25호 (2002.06.10)	선형 변경

나. 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노 선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3-164호선	○ 선형변경 - 당초 : L=483.0m B=6.0m - 변경 : L=480.0m B=6.0m	○ 동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로개설 공사에 따라 원활한 도로선형 유지하고자 기본설계를 반영한 군계획시설(도로)를 결정(변경)하고자 함

2. 열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3. 관계도서 열람 및 의견 제출 장소: 거창군 도시건축과

4. 의견 제출방법 : 위 공람 기간 내 다음 항목을 기술한 의견을 거창군수 (도시건축과장)에게 서면(우편번호:670-870/주소: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도시건축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거창군 도시건축과(☎055-940-35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군관리계획(교통시설)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성 명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거창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거창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가. 교통시설(변경)

1) 도로(변경)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 정	소 로	3	164	6	국 지 도 로	483	거창동 변514- 3	소3-16 7	일반 도로	동변 지구	거고25호 (’02.6.10)	
변 경	소 로	3	164	6	국 지 도 로	480	거창동 변514- 3	소3-16 7	일반 도로	동변 지구	-	

■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3-164	소로3-1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 선형 변경 -폭원:6m 연장:483m→480m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로 개설 공사에 따라 원활한 도로 선형을 유지 하고자 기본설계를 반영한 군계획시설 (도로)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가. 동변지구단위계획(변경)

가) 세분된 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지 구 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제한내용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7	동변지구	주 거	거창읍 동변리 72-1 일원	지구단위계 획에 의함	100,000	거고25호 (02. 6.10)	

나) 용도구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 성 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계	100,000	-	100,000	100.0	
주 거 용 지	89,180	-	89,180	89.2	
녹 지 용 지	10,820	-	10,820	10.8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변경)

①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164	6	국 지 도로	483	소2-238	소3-166	일반 도로	-	거고25호 ('02.6.10)	
변경	소로	3	164	6	국 지 도로	480	거창동변 514-3	소3-165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3	165	6	국 지 도로	64	거창동변 187-3	소3-164	일반 도로	-		

■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3-164	소로3-1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 선형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폭원:6m 연장:483m→480m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로 개설 공사에 따라 원활한 도로 선형을 유지하고자 기본설계를 반영한 군계획시설(도로)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② 편의시설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분	도 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2	공동회관	동변리 187-1 일원	533	-	533	주거용지

라)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 분	지 정 용 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층)		
				최고	최저	
주거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시행령 제71조제 1항제3호 및 거창군계획조례 별표3(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 건축물 	60	150	4	-	
녹지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창군계획조례 별표16(자연녹지지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 건축물 	40	100	4	-	
편 의 시설	공동회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 다 목의 집회장 및 부속건물 	60	150	4	-
공 시	도로	-	-	-	-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1항을 위반한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같은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부과, 독촉 고지서, 압류예고문을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자동차·건설기계관리법위반자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등
- 공고기간: 2018. 4. 30. ~ 2018. 5. 15.
- 공고대상: 붙임
- 문 의 처: 거창군청 민원봉사실 민원담당(☎055-940-3293)

공고기간 내에 처분사항에 대하여 서면, 구술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 경과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됩니다. 자동차와 건설기계 검사기간 위반자 중 「질서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과태료 행정처분전 자진 납부 시 부과금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후 납부 지연 시 가산금 5%, 증가산금 매월 1.2%인 최고 77%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납부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의거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자동차,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 조치됨을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7일

거 창 군 수

붙임: 자동차와 건설기계 검사경과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내역 1부. 끝.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63조, 제7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검사사전안내, 검사 유효기간경과 안내, 검사명령서, 운행정지명령서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정기검사 최고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이사, 수취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다 음

- 공고제목: 자동차·건설기계 정기검사 사전안내, 경과안내, 검사명령서, 운행정지명령서 등 반송분 공시 송달 공고
- 공고기간: 2018. 4. 30. ~ 2018. 5. 15.
- 공고대상: 붙임
- 문 의 처: 거창군청 민원봉사실 민원담당 (☎055-940-3293)

공시송달 대상자는 빠른 시일 내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정기검사기간이 계속 지연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3항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제3항 규정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며, 같은법 제81조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가 직권말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4월 27일

거 창 군 수

붙임: 자동차와 건설기계 검사경과 우편 반송분 공시송달내역 1부. 끝.

소하천의 점용 허가 공고

거창군 공고 제2018 - 587호

「소하천정비법」 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소하천 점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일

거창군수

시행자 (점용·사용자)	상호 및 명칭	마리면장		
	대표자 (성명)	안장군	주소	경남 거창군 마리면 빼재로 18
소하천명		고창천		
공사(점용·사용) 개요	위치	경남 거창군 마리면 하고리 805번지 등 6필지		
	면적	영구점용: 31.7㎡ 일시점용: 173.0㎡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점용기간	2018. 4. 18. ~ 2018. 7. 17.(영구)		
	목적 및 사유	주민통행불편 해소를 위한 교량 재가설(L=6.0m, B=4.4m)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210mm×297mm [백상지 80g/㎡(재활용품)]